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등을 위반한 아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13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인)			주요 경력종목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주소			
김찬영	63****	경남 고성군 (이하 생략)	조경 초급 토목 초급	업무정지 4.5개월 (2024.06.01. ~ 2024.10.15.)	거짓신고(1회)
이인희	58****	경북 상주시 (이하 생략)	조경 초급 토목 초급	업무정지 4.5개월 (2024.06.01. ~ 2024.10.15.)	거짓신고(1회)
박갑이	60****	대구광역시 (이하 생략)	안전관리 특급	업무정지 3개월 (2024.06.01. ~ 2024.08.31.)	거짓신고(1회)
홍윤철	68****	경남 거창군 (이하 생략)	조경 초급 품질관리 초급	업무정지 4.5개월 (2024.06.01. ~ 2024.10.15.)	거짓신고(1회)
이경숙	67****	경남 밀양시 (이하 생략)	토목 초급 건축 초급	업무정지 3개월 (2024.06.01. ~ 2024.08.31.)	거짓신고(1회)
이진국	71****	경남 양산시 (이하 생략)	토목 고급	업무정지 3개월 (2024.06.01. ~ 2024.08.31.)	거짓신고(1회)
최호성	64****	부산광역시 (이하 생략)	설계·시공(건축) 고급	업무정지 3개월 (2024.06.01. ~ 2024.08.31.)	거짓신고(1회)

2. 법적근거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[별표1]

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기 타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☎051-660-10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